

어민교실

어선에 관한 세무행정(IX)

수협중앙회 기획실
차장 고석환

1. 선원보수와 세무

(1) 선원보수에 대한 세무조사의 강화

○ 세무당국에서는 최근 조세징수 강화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탈루(脫漏)되었거나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각종 세원(稅源)의 포착에 주력하고 있어 종전까지는 세무상 하등 문제점 없이 그냥 지나쳤던 것이 요즘에는 세무상 커다란 잇슈로 대두하는 예가 비일비재 합니다. 최근 세무당국이 강화하고 있는 세무조사의 대상으로는 첫째, 그동안 성역(聖域)으로 되어있던 공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의 확수 둘째, 세원포착이 어려운 의사 변호사, 회계사, 예술가등 자유직업인의 소득에 대한 탈루분의 추적

셋째, 수산업자, 축산업자등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에 대한 유통체계의 추적등 세무조사의 다변화

○ 세무당국은 이를 조사대상중 수산업을 경영하는 부문에서는 당해 수산업자의 소득 누락이나 유통체계의 추적등에 힘을 쓰는 것은 물론, 그들이 수산업경영을 위하여 소요된 제경비의 지출이 세법상 타인의 과세소득에 해당되느냐 아니냐 하는 점에 대해서까지도 초점을 맞추어 조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 조사에서 나타난 잇슈가 「선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대한 세무처리를 선주들이 제대로 이행하고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선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대하여 선주로서는 세법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하는 점은 당해 보수의 내용이나 지급형태에 따라 그 처리방법이 각각 다르겠으나 여하튼 그것이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이라는 점에는 틀림이 없으므

로 동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소득을 지급하는 선주등 경영자는 징수의무를 또 보수를 지급받는 선원등 종업원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선원이 받는 보수」의 지급실태

○ 수협중앙회가 82년도 어업경영상황을 조사하면서 병행 실시한 어업임금실태 조사내용에 의하면 선주등 경영자가 선원에게 지급하는 근로의 대가 즉 보수의 실태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별 임금의 지급형태

지급형태	업 종	비 고
고정급	정차망어업, 기선권형망어업,	정차망어업 : 월급제
짓가림	대형선망어업 대형기선저인망어업, 서남구 기선저인망어업, 잠수기어업 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 근해 안강망어업, 근해통발어업, 오징어일본조어업	
고정급병 용짓가림	근해포경어업, 동해구트롤어 업	생산고비례 및 초과생산수당

○ 업종별 임금지급의 결정방법

결정방법	업 종	비 고
단체협약	대형기선저인망어업, 동해구 기선저인망어업, 대형선망어 업, 서남구기선저인망어업, 동해구트롤어업, 기선권현망 어업, 근해포경어업, 근해안 강망어업	각 업종별조 합 대(對)한 국해원노조
개별협약	정차망어업, 잠수기어업, 근 해유자망어업, 오징어일본조, 근해통발	선주대(對)선 원대표

2. 선원보수의 세법상 위치

(1) 선원이 노력대가로 받는 보수는 그 양태에 따라 다소 다르겠으나 일반적으로 보아 그것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 됩니다.

○선원이 승선하여 수산업경영에 노력을 제공함으로써 선주로부터 노력제공의 대가로 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근로소득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감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에 유사한 성질의 급여

○선원보수를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은 선주와 선원간에는 유무형의 고용관계가 있으며 선원이 받는 것이 고정급이든, 짓가림이든간에 그것은 모두 근로제공의 댓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선원이 받는 보수를 근로소득으로 취급하는 데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첫째, 선주와 선원간에 고용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의 용역제공에 대한 댓가는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고용관계에는 고용문서 작성여부를 불문하며 또 일용고용관계도 당연히 고용관계에 포함됩니다.

둘째, 「근로」라는 용역제공에 대한 댓가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관계의 범위를 초과한 근로의 제공이나 근로이외의 용역제공 또는 재화의 제공에 대한 댓가는 근로소득으로 취급하지 아니합니다.

(2) 선원보수 즉 근로소득의 소득세법상 구분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을 「갑종」과 「을종」으로 대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구분은 보수지급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서 연 균해어업에 종사하는 선원이 받는 근로의 대가는 모두 국내세법의 적용을 받는 선주가 지급하는 급여이므로 이들은 모두 갑종근로소득에 해

당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구분은 급여지급자 즉 선주의 원천징수의무 여부를 판가름하는 규정으로서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받는자가 누구이던간에 소득세법 제142조이하에서 규정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을종근로소득의 지급자(외국기관 국외에 있는 외국인등)는 동 의무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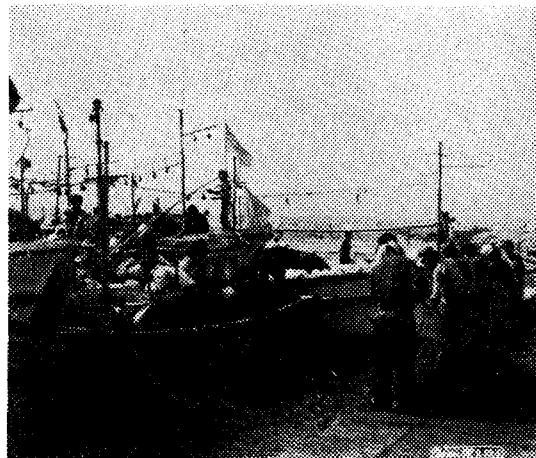
○일용근로소득과 일반근로소득

일정한 선주에게 3개월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오직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댓가를 계산하여 받는 선원을 소득세법에서는 「일용근로자」라 하고 일용근로자가 받는 근로의 댓가를 「일용근로소득」이라고 하며, 이와 반대로 월정(月定)으로 받는 선원의 근로댓가를 일반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일반근로소득이라 함은 근로제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주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으로 지급받는 경우나 그 고용기간이 3개월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소득세법에서 이를 양자를 구별하는 것은

첫째, 과세표준 계산의 차이

둘째, 적용세율의 차이

셋째, 지급조사체출 여부등에 차이가 있읍니다. 이점은 다음 「3」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코자 합니다.



(3) 과세대상이 되는 선원보수와 과세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선원보수

□ 선원에게 직접 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보수는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되지만 다음에 열거

한 것은 근로의 직접댓가와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소득세법상 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읍니다.

○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여기에는 연월차수당, 보전단련비등이 포함됩니다.

○ 아래 열거한 유사급여

① 기밀비, 교제비, 관공비등으로 지급했으나 당해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하는 것.

② 고용주로 부터 받는 상금 공로금등

③ 선원이 부담해야 할 소득세를 선주가 대신 부담한 경우

④ 특별위로금

⑤ 자녀교육보조금

⑥ 선원이 받은 축의금, 조의금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과다하게 지출한 경우

□ 선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근로소득이고 근로소득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과세소득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과세소득이라 하더라도 조세정책적인 목적에서 국가가 조세체권을 포기(비과세)하거나 조세체권을 유보(면세)하여 과세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으로 하지 않는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중 선원에게 관련된 것으로는 다음 열거한 것과 같습니다. 즉 다음 열거한 것은 선원에게 지급하는 보수하더라도 과세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째, 선원이 근로중 제공하다가 그로 인하여 부상이나 질병 또는 사망함으로써 당해 선원이나 그 유가족이 받는 재해보상금

둘째, 다음 열거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보수

① 선원법에 의하여 선주로 부터 선원이 지급 받는 식료

여기서 식료라 함은 교통부령으로 정한 「선원식료품공급규칙」에 의하여 선박소유자가 승무중인 선원에게 공급하는 식료품을 말합니다.

② 일·숙직비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것

③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선원이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및 장사비

셋째, 다음열거한 복리후생적인 급여

① 선주가 부담하는 의료보험료

② 연월차수당, 주휴수당중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 그러니까 연 100만원이 초과되는 것은 과세대상이 됩니다.

(4) 선원보수에 대한 세무

□ 지급하는 선주측의 세무

○ 선주는 선원에게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때마다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원천징수란 같은 각 세법에서의 규정에 의거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마다 당해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사람이 국가를 대신하여 소정의 세액을 징수해서 법정기일내에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선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처럼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매월고정급으로 지급하는 일반급여의 경우와 성과급에 의한 일용근로소득의 구분에 따라 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가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고정급으로 지급받는 선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도 함께 하여야 합니다.

○ 선주는 원천징수의무 뿐만 아니라 세금을 징수해서 정부에 납부했다는 원천징수사실을 증명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당해 선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동 지급사실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지급초서 제출의무).

□ 지급받는 선원측의 세무

○ 일용근로자가 아닌 선원이 1월부터 12월 까지의 기간중에 선주로 부터 받는 보수(근로소득)이외에도 이자(은행이자 제외)배당소득 차유적업소득, 부동산소득, 기타소득이나 그외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에 1년간 발생된 각종 소득을 종합·합산하여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하고 세액도 자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일용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위처럼 합산되지 아니합니다. 또 일용근로소득이 아니더라도 근로소득이 한 곳에서만 발생된 경우이거나 근로소득이 여러곳에서 발생되더라도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도의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3. 선원보수지급에 따른 선주의 원천 징수 요령

선주가 선원에게 승선에 따른 근로의 댓가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 무가 있다는 세법 규정은 앞에서도 이미 설명하였읍니다. 그러나 선주는 선원이 받는 보수의 지급구분에 따라 그 의무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가장 큰 차이는 당해 보수가 일반근로소득으로서의 고정급이냐 아니면 일용근로소득으로서의 성과급이냐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며 또 같은 고정급이라해도 그 지급시기가 어느 달이냐, 즉 1월부터 11월까지이냐, 아니면 12월분 지급이냐에 따라서도 징수의 무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하 이들에 관해서 요약해서 설명코자 합니다.

(1) 매월 고정급으로 지급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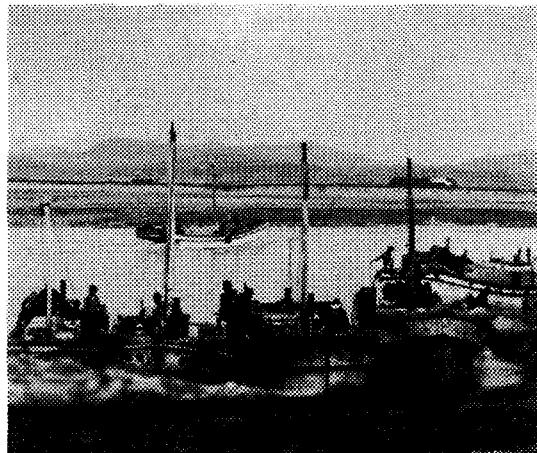
□ 1월부터 11월분까지 선원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표와 같이 소득세 방위세 주민세를 징수해서 그 다음날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종합소득세)	방 위 세	주민세
보험료 공제 후의 월보수액에 대하여 세법소정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액표를 적용한 소득세액	소득세의 10%. 다만, 선원보수가 월 70만원 초과시는 20%임.	소득세의 7.5%

○여기서 간이세액표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7조에 의거 별표로서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규정한 세율을 소득계급과 부양가족수에 따라 쉽게 세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편법으로 정한 세액조견표입니다. 따라서 개정되거나 가족공제액이 개정될 때에는 간이세액표도 함께 개정되어야 합니다.

○선주가 간이세액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선원의 부양가족수를 알아야 하는 바 선주는 선원보수 지급 이전에 다음 서류를 선원으로부터 제출받아야 합니다.

첫째, 전년도부터 계속 고용하고 있는 선원의 경우 : 서류를 별도로 제출받을 필요없이 전년도 가족수에 따라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면 됩니다.



둘째, 당해 연도중에 다른 직장에서 일하던 사람을 선원으로 고용한 경우에는 당해 선원의 전근무지에서 원천징수당한 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제출받아야 합니다.

셋째, 전혀 새로 들어온 선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한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 받아야 합니다.

□ 선주가 선원에 대한 보수지급시마다 매월 원천징수를 제대로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12월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한 간이세액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과 매월 지급한 보수(소득)를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합산되는 소득에는 비과세소득이외의 상여금 유사급여등 모든 근로소득이 포함됩니다.

○선주는 선원으로부터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받아 세법 소정의 연말정산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에 제출하는 소득공제신고서에는 원칙적으로 매년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해야 하지만 전년도 연말정산시의 부양가족수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다시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절차는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모두 설명할 수 없으므로 여기서는 그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을 피하고자 하며 실제로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매년 관계 세무당국에서 책자도 발간하고 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선원중에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소득세법에 규정한 소정의 서류를 제출

토록 각 선원에게 원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선주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 해 1월 10일 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할 것이며 만일 선원 개인별로 징수할 세액이 없고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주 스스로가 자체 조정해서 다른 사람이 납부할 세액에서 환급해 주어야 하며, 환급할 세액도 없는 경우에는 다음달에 세무서에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선원에게 환급해 주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원료한 경우에는 위 「2, (3)」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천징수영수증을 3배 작성하여 1매는 선원에게 교부하고 1매는 2월 말 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세법에서는 지급조서제출의무라고 합니다. 만일 선주가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frac{3}{10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가산세로 추징하게 됩니다.



□ 상여금이나 초과생산수당등 보너스 성격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한 원천징수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며 이때에는 동 상여금의 지급이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에 따라 세액계산방법이 다소 달립니다. 선주가 상여금등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여금 역시 앞에서 설명한 연말정산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선주가 선원자녀의 교육보조비로 지급하는 것도 상여금에 대한 세액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2) 성과에 따라 선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즉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 어획했을 때마다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하여 동 세액을 1개월마다 합계하여 징수한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 득 공 제	세 율	세 액 공 제
'83년기준 일일 15,000원	6%	산출세액의 30%

※ 세액계산요령

$$\text{○(매일 지급한 보수액} - 15,000) \times \frac{6}{100} \times \frac{70}{100} = \text{매일 지급한 보수에 대한 소득세액}$$

$$\text{○방위세} = \text{소득세} \times \frac{10}{100}$$

$$\text{○주민세} = \text{소득세} \times \frac{7.5}{100}$$

□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는 간이세

	일용근로소득	일반근로소득
법근거	소득세법 제21조, 2항 제 1 호 「나」 목	소득세법 제21조제 2 항제 1 호 「가」 목
과세표준계산시 적용되는 소득 공제(가족공제) —'83기준—	일일 15,000원	○기초공제 : 30만 원 ○배우자공제 : 42 만원 ○부양가족공제 : 1인당 24만원 ○장애인공제 : 1 인당 30만원
적용세율	$\frac{6}{100}$ (단일세율)	$\frac{6}{100}$ 내지 $\frac{55}{100}$ (17단계세율)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 제 : 산출세액의 $\frac{30}{100}$	○근로소득세액공 제 : 소득세율에 따라 $\frac{10}{100} \sim \frac{30}{100}$ ○외국납부세액공 제 ○국외근로소득세 액공제 ○재형저축세액공 제
연말정산	불필요함	반드시 하여야함
지급조서(원천징 수영수증)제출	의무없음	반드시 제출하여 야함

액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월 세액을 징수하는데 별도로 제출받아야 할 필요한 서류가 없읍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이 일반급여와 세액계산에 있어 다른 점을 열거하면 앞의 표와 같습니다.

(3) 선주가 선원보수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세무상 규제 내용

선주가 선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면서도 소득세법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세무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첫째, 세법소정의 소득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한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text{징수할세액 또는 } \frac{\text{과소납부한 세액}}{100}) \times (1 + \frac{10}{100})$ 에 상당하는 세액을 즉시 추징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의 $\frac{10}{100}$ 에 상당하는 세액이 가산세입니다.

둘째, 연말정산시 선원들의 소득공제신고서나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 신청서류를 제대로 제출받음 없이 가족공제나 세액공제 및 감면을 해주었을 때에는 세무조사시 당해 공제액을 인정치 않고 그에 상당하는 세액을 즉시 추징 당하게

됩니다. 세무당국은 이때 선주에게 일단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이므로 세금은 선주가 대신 납부해야하고 추후 선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읍니다.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골치아픈 시비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원천징수영수증 등 지급조서를 세법소정의 기일내에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frac{3}{100}$ 에 상당하는 소득세를 가산세로 추징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정기일내에 제출했다 하더라도 제출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기재내용중 필요적 기재사항을 불명확하게 기재함으로써 불명자료가된 경우에는 불명자료 가산세($\frac{3}{100}$)를 과세받게 됩니다. 다만 불명자료 가산세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는 선주만이 과세대상이고 그 이외의 개인사업자는 해당없읍니다.

(4) 선주가 선원의 세금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선주가 선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해 세금을 근로소득으로 하여 선원 개개인이 이미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합산시킨 후 원천징수로 하고 지급조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 산 품 을 애 용 하 고
가 짜 외 래 품 을 추 방 합 시 다